가정통신문 2020-92호	정보통신윤리 학부모 교육 자료 [저작권 살펴보기]	담 당 박승주 (580-3017)
12417 경기도 가평군·읍 광장로 10번지	☎ 580-3000(교무실)	http://gapyong.ms.kr

□ 저작권은 뭔가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요?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 원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 소설, 영화, 음악, 미술 작품 등의 창작물들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 재미있고 뛰어난 작품일수록 더 비싼 값에 팔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소설가 A씨와 B씨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A씨는 특유의 글 솜씨로 재미있는 소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소설책을 출판하였고, 그 소설이 인기를 얻으면서 영화 제작자의 제의를 받아 소설을 영화로도 만들게 되어 소설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설로 돈을 벌게 되자 A씨는 다른 걱정 없이 소설 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더욱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소설가 B씨도 인기 있는 소설의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소설이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B씨의 소설을 인터넷 자료실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다운받아 공짜로 보면서 아무도 B씨의 소설책을 사지 않았던 것이지요. 수입이 없는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고, 소설을 쓸 시간도, 의욕도 상실한 채 결국 소설 쓰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좋은 작품으로 나왔을지도 모르는 B씨의 소설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 저작물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비록 저작자 개인이 창작해 낸 것이기는 하지만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작되며 그렇게 만들어진 저작물도 또다시 문화유산으로 후세에 이어져 다시 새로운 저작물 창작과 문화 발전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무한정 보호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게 하여 결국 우리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저작권 보호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 영구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 동안이고,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 동안입니다.

한편, 저작물도 모두 보호받는 것은 아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라면 조건에 맞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1번에서 3번까지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나.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5)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방송
7)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8) 방송사업가의 일시적 녹음・녹화
9)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10)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11)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12)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13) 프로그램 역코드 분석
14) 미술・사진・건축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15) 번역 등에 의한 이용
16) 프로그램 정당소지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자료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실**

2020. 08. 10.

가 평 중 학 교 장(직인생략)